

[사 건 명] 핵심 2019 - 30

『사회봉사 3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3일』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2.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3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03.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중에 실수로 2정거장 앞에서 하차하였고, 청구인이 잘못 내리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먼저 학교에 도착한 친구가 청구인을 놀리자 청구인은 욕설을 하게 되었다.

나.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청구인의 욕을 듣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담임교사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는데도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지속하여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였고,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도 문을 세계 닫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다. 담임교사가 당일 안전생활부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 라. 2018.12.04.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 2018.12.05. 『사회봉사 3일(24시간)』 처분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구두상으로 통보하고, 청구인의 학부모에게는 유선으로 통보하였다.
- 마. 2019.01.16.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및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법적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지도 않았는바 ‘행정절차법’ 및 ‘○○○○○○ 교육청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지침’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행정처분에 불과하며, 성급하게 선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졸속 행정을 구현하고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기에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학생선도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담임선생님께서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는데도 욕설을 하는 등,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도 문을 세계 닫는 등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청구인 친구의 장난에서 시작된 청구인의 투정에 불과한 욕과 찰나의 실수로 손이 미끄러져 발생한 문소리이며, 청구인은 담임교사의 반성 요구에 순순히 따르고, 담임교사의 오해를 풀려고 말하였으나 담임교사가 말대꾸 한다면서 제지하자 청구인은 순순히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말만 듣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의 그동안의 행동을 담임교사가 작성한 ‘행동발달누가기록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행동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불과하며, 오히려 청구인 및 ○○○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살펴보면 공통되게 담임교사에게 문제가 있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그 실체가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으로써 애초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발한 사유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마. 청구인은 담당교사의 체벌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14일 치료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와 같은 증상을 앓고 있으며 이는 교사의 재량권 남용이 정신적 성장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얼마나 참담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법정대리인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죄송하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죄를 뉘우쳤다는 의미에서의 감형요소로 본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였다는 가중요소로 보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징계인 사회봉사 처분을 한 것으로 학생선도를 위한 절차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에게 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학교의 일정(2회고사, 겨울방학)과 학생의 개인일정(체험학습)으로 인

하여 방학 전에 처분이 시행되지 않으면 방학 때 학생 및 학부모가 등교해야 하며, 늦어질 경우 학년도를 넘겨 처리해야 되는 등 일정이 촉박하여 일단 유선으로 전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항은 담임교사가 직접 처분의 결과를 구두로 통보하였고, 안전생활부에서는 해당학생을 불러 학생선도위원회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이후 서면으로 통보하려 하였으나 학생과 학부모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처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판단하여 서면 통보는 하지 못한 것이다.

다.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학생 본인은 “욕설은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등 잘못을 시인하였고, 학부모는 의견 발언 기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어 죄송하고 담임선생님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학생선도위원회 위원들은 학생과 학부모 및 담임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 선도를 위한 처분을 하였다.

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생 선도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다. ○○○○○○교육청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지침

라. ◎◎학교 학생 생활 선도 규정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 가. 청구인은 2018.12.03. 버스에서 잘못 내리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먼저 학교에 도착한 친구가 청구인을 놀리자 청구인은 친구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청구인의 욕을 듣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담임교사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는데도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지속하여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였고,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도 문을 세계 닫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 나. 피청구인은 바로 당일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고, 청구인측에 별도의 서면통지 없이 유선상의 통지만으로 바로 다음날인 2018. 12. 4.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는 청구인측에게 짧은 시간의 의견진술기회만 제공하였으며,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18. 12. 5. 청구인에게 별도의 서면통지 없이 구두상으로만 통지하고, 피청구인은 위 의결에 대하여 2018. 12. 6. 결재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측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담임교사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는데도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지속하여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였고, 위와 같은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도 문을 세계 닫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남용일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 및 ○○○○○교육청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지침, ◎◎학교 학생 생활 선도 규정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측에 대하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근거 등이 명시된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에 필요한 충분한 기회와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하고, 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통지해야 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위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